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59266 지방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구합1603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3.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0,480,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6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1,048,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6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및 당심의 각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5. 원고에게 한 지방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까지 모두 인용한다. (피고는 제1심이 엄격해석을 빙자한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강변하나, 피고의 주장이야말로 합목적적 해석을 빙자한 행정편의적·자의적 해석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의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가 '오로지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하등의 근거가 없다. 피고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같은 항 제7호의 예외 조항이라며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편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듯이 주장하나, 전자는 후자와 병렬적으로 주택의 유상취득 시 취득세율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가 그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가사 피고의 주장이 맞다 한들, 그것이 문언을 무시한 법규의 해석·적용을 정당화할 수도 없다.)

○ 제1심 판결 2면 5행의 "D가"를 "I이"로, 같은 면 6행의 "9채"를 "7채"로, 같은 면 7행의 "E, F로부터"를 "E으로부터"로, 각 고친다(이하 면과 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9

과 행을 가리킨다).

○ 2면 하단 3행의 괄호 안 끝에 쉼표를 찍고, 이어서 "이하도 같다"를 추가한다.

○ 2면 맨 끝 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의"를 "을 제1, 2, 3, 5, 6호증의"로 고친다.

○ 7면 6행부터 8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만,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의 초과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 세액의 산출이 가능할 때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8930 판결 등 다수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각 과세표준은 모두 매수가격인 2억 6,200만 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22.09㎡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50% 경감의 요건인 60㎡를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각 세율(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1%)을 적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정당 세액을 계산하면 취득세가 262만 원(＝2억 6,200만 원×0.01), 지방교육세가 262,000원(＝2억 6,200만 원×0.01×0.1)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10면 하단에서 3행의 "제22조의1"을 "제22조의2"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7-19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